#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 회비관리 규정

제정 2019.02.25.
개정 2020.04.08.
개정 2021.11.08.
개정 2025.10.31.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광주광역시 북구체육회(이하 “본회” 라 한다) 회비 납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회비의 구분)** 회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

1. 이사회비
2. 기타 찬조금
3. 세외수입(기탁금)<개정 2020.04.09.>
4. 세외수입(출연금)<개정 2025.10.31.>

**제3조(회비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① “이사회비” 라 함은 본회 부회장, 이사가 매 회계연도마다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.

② “기타 찬조금” 이라 함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납부하는 회비를 말 한다.

**제4조(적용의 범위)** 회비에 대한 적용 범위는 본회 정관 제27조(임원의 선임)에 의거 선출, 선임된 임원(감사 제외)에 준한다.<개정 2021.11.08.>

**제5조(회비의 납부)** ① 해당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매년 4월 30일까지 본회 지정 계좌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1. 부 회 장 : 년간 200만원 이상
2. 이 사 : 년간 50만원 이상

② 보선 또는 새로 선임되는 임원은 이사회 의결 전 이력서와 회비를 선납하여야 하며, 이사회 미승인 시 당사자에게 반환한다.

**제6조(회비의 사용 및 관리)** ① 회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.

1. 종목단체 대회 격려금 또는 포상금
2. 본회 사무국 운영 또는 사업비

3. 임·직원의 복리후생비
4.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
5. 기타 본회 사무국 발전을 위하여 회장이 결정한 사항<개정 2020.04.09.>
② 회비는 별도계좌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사용 후 남은 금액은 익년도로 이월하여 운용한다.
③ 회비는 관리장부를 비치하여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 유지한다.

**제7조(회비의 결산)** 당해연도 회비의 집행결과는 회계연도 종료 후 본회 감사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8조(임원자격상실)** 회비 납부일 3월 이상 경과시에도 미납 시에는 사무국에서 제명 조치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. 단, 사무국은 미납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납부안내를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하여야 한다.

**제9조(미비사항)**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 등 통상 관례에 따른다.

**부 칙**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20.04.8.)**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21.11.08.)**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25.10.31.)**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